

##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5월 30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



### 1. 제안이유

공중케이블의 난립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감전 사고 및 화재 등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비 미흡과 미철거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강동구민이 공중케이블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지원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라.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(안 제5조)
- 마.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민관협의회 기능 (안 제6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[참조 : 의회사무국장,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, 전화 : 02)3425-7382, FAX : 02)3425-7292, E-mail : gratia@gangdong.go.kr]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 
다. 기타 참고사항